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행정기본법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김부겸 (법제처 소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행정기본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과징금·이행강제금 제도 등 유사한 제도의 공통 사항을 체계화하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는 등 행정 분야에서 국민의 실체적 권리를 강화하며,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분의 재심사 등의 방법과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 시 고려사항(안 제3조)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나 목적 등에 준하는 사항을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여부 및 그 정도,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로 정함.

나. 인허가의제 관련 협의회(안 제4조)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 관련 인허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견 조정이나 협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다. 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안 제5조)

- 1)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의 내용과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통지하도록 함.
- 2)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거나 주된 인허가가 있을 후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3) 주된 인허가 행정청 또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의 관리·감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간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안 제7조 및 부칙 제2조)

- 1)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
- 2)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적 근거가 「행정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으로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금지하고 있는 31개의 해당 규정을 「행정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르도록 부칙에서 정비함.

마. 이의신청의 방법 등(안 제10조)

- 1)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당사자는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및 처분을 받은 날, 이의신청 이유 등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함.
- 2)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를 연장할 때에는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함.

바.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안 제11조)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등으로 정함.

사. 처분의 재심사 방법 등(안 제12조)

- 1)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재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및 처분이 있는 날, 재심사 신청 사유 등을 적은 문서에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함.
- 2) 행정청은 재심사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20일 이내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보완을 요청하도록 하되, 보완에 걸리는 기간

은 재심사 결과 통지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

아.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및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행정 분야의 법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과 법제처장이 공동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함.

2) 국가행정법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자. 현행 법령의 영향 등에 관한 분석의 실시(안 제16조)

법제처장은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입법의 효과성 및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분석의 결과 해당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령정비계획 수립 또는 입법계획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1.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기본법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행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행정작용

제3조(제재처분의 기준)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여부 및 그 정도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제4조(인허가의제 관련 협의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된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 행정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이견 조정이나 협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련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 행정청과 협의·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 ①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법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이하 이 조에서 “관련 인허가 절차”라 한다)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통지해야 한다.

1. 관련 인허가 절차의 내용
2. 관련 인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3. 그 밖에 관련 인허가 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②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주된 인허가를 하거나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주된 인허가가 있는 후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 또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된 인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의 관리·감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련 인허가의 관리·감독 등 조치를 한 경우로서 그 관리·감독 등의 조치가 주된 인허가의 관리·감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상호 간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6조(공법상 계약의 방법 등) ① 행정청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이하 “공법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때 법령등에 따른 관계 행정청의 동의, 승인 또는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거쳐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작성되는 계약서(이하 이 조에서 “계약서”라 한다)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 상대방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계약 목적
3. 계약 기간
4. 계약의 변경·해지 및 무효 등에 따른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③ 계약서는 해당 행정청과 계약 상대방이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제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과징금 납부 의무자는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연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같은 조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및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법 제2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2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해당 위원회”라 한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
2.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에 법 제3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또는 부과 상한을 정하는

경우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고(戒告)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무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이행하지 아니한 행정상 의무의 내용 및 법적 근거
3. 행정상 의무의 이행 기한
4.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
5. 이의제기 방법 등 그 밖에 계고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정상 의무의 이행 기한을 정할 때에는 행정상 의무의 성질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방법)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무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이행하지 아니한 행정상 의무의 내용 및 법적 근거
3. 행정상 의무의 이행 기한
4.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시할 직접강제의 내용
5. 이의제기 방법 등 그 밖에 계고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증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행책임자의 성명 및 소속

2. 해당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의 근거 법령

3. 그 밖에 해당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이의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연락처

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및 처분을 받은 날

3. 이의신청 이유

② 행정청은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를 연장할 때에는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③ 행정청은 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청에 이의신청 처리상황 등 이의신청 제도의 운영 현황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2.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3. 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된 경우

제12조(처분의 재심사 방법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연락처

2. 재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및 처분이 있는 날

3. 재심사 신청 사유

② 행정청은 법 제3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결과의 통지를 연장할 때에는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20일 이내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통지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

제13조(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행정분야의 법제도(이하 “행정법제”라 한다) 개선 및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새로운 행정법제의 도입과 행정법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행정법제의 법 적용 기준에 관한 사항
3. 행정법제의 실태 조사 및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법제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법제처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행정법제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법제처

장인 공동위원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정부위원: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법무부

나. 행정안전부

다. 국무조정실

라. 인사혁신처

마. 법제처

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법제처장인 공동위원장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2. 위촉위원: 행정법제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제처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입법영향분석의 실시) ① 법제처장은 행정법제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입법의 효과성 및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이하 “입법영향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입법영향분석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 및 실효성 분석

2. 법령의 정책적 효과성 및 효율성 분석

3. 그 밖에 법령이 미치는 각종 영향에 관한 분석

③ 법제처장은 입법영향분석 결과 해당 법령의 정비が必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입법계획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라 설립된 한국법제연구원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법제처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 그 조사·연구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행정의 입법활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행정법제의 개선 및 법령해석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서식)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통지서, 처리대장 및 그 밖의 서식은 법제처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제1조, 제2조 및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5항을 삭제한다.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을 삭제한다.

③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5조의7제5항을 삭제한다.

④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⑤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을 삭제한다.

⑥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4항을 삭제한다.

⑦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5항을 삭제한다.

⑧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⑨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5항을 삭제한다.

⑩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을 삭제한다.

⑪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6항을 삭제한다.

⑫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을 삭제한다.

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⑮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제4항을 삭제한다.

⑯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을 삭제한다.

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6제5항 및 제26조의5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⑱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10제5항을 삭제한다.

⑲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을 삭제한다.

⑳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5제4항을 삭제한다.

㉑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㉒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

㉓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을 삭제한다.

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을 삭제한다.

㉕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5항 및 제14조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㉖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

㉔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5항을 삭제한다.

㉕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

㉖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4항을 삭제한다.

㉗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을 삭제한다.

㉘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을 삭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연 락 처	(044) 200 - 6741